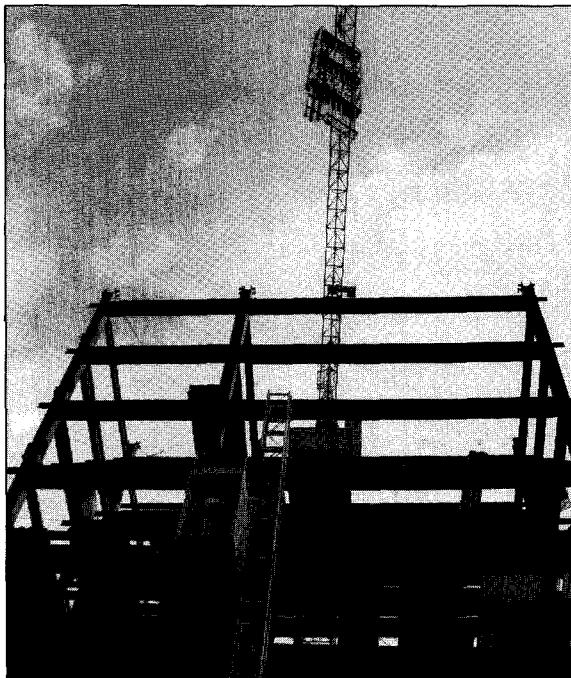


해외건설 국제 경쟁력 강화대책

건설부는 건설시장개방에 따른 외국업체의 국내건설시장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해외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외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엔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장치들은 모두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 해외건설 진출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는 제조업 등 국내여타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우리 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건설업체가 자국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과 대등한 수준으로 해외건설에 대한 지원을 확충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마련된 「해외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대책」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편집자 誌〉



1

UR 및 정부조달 협상의 타결로 세계건설시장의 대외 개방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 해외건설 진출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해외건설 활성화 조치에도 불구하고成效인이 많다는 지적이다.

해외건설은 선
진기술과 경영
관리기법을 습
득하게 하므로
우리 건설산업
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
제수지 개선을
위해 제조업 상
품수출과는 달
리 수입 유발이
없는 외화가득
산업으로 집중
육성을 해야 한
다.

해외건설 국제 경쟁력 강화대책

■ 연불자금조건 개선

[1]자금배정

현재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기술제공자금을 수출금융자금에 포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기술제공자금의 우선지원 순위는 ①기술용역전문사업 ②산업설비수출에 따른 기술제공사업 ③해외건설공사로서 산업설비 설치 및 관련공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타 지원자금과 통합 운영됨으로써 사실상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지원이 제한되어 있고 토목과 건축 등 해외건설공사는 사실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개선방향으로 기술제공자금의 우선지원규정을 삭제하고,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수출자금의 30%를 별도 책정하도록 한다.

[2]융자대상 공사

①현재 최근 3년간 건설수주 실적의 5% 미만을 차지하는 국가의 공사로 제한하고 있어 융자지원 가능공사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되어 있으며

②산업설비설치 및 관련공사는 대외무역법에 정하는 산업설비로 제한하고 있어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해 진출하는 경우엔 사실상 자금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③컨츄리·리스크(Country Risk) 분류기준도 적당하지가 않아 이란과 리비아 등 외국업체 수주가 용이한 국가의 경우 리스크가 높게 분류돼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컨츄리·리스크를 무디(Moody :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개선방향으로 최근 3년간 건설수주실적이 전체수주실적의 20% 미만을 차지하는 국가로 대상을 확대하

고, 건설부 장관에게 해외공사수행 계획을 신고한 경우에도 연불금융수혜가 가능하도록 하며 일본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컨츄리·리스크 분류기준을 제정해 운영하도록 한다.

[3]외화가득률

현재 융자대상 계약금액의 30%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어 현지 및 제3국 인력과 자재, 현지 하청이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이 기준의 충족이 불가능하므로 외화가득률 요건을 30%에서 15%로 완화한다.

[4]연불기간

현재 토목과 건축은 6년, 산업설비는 10년으로 되어 있어 대규모 공사가 많은 해외건설공사 특성에 비춰 효과적인 지원에 제약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토목과 건축공사도 산업설비수준인 10년으로 연장한다.

[5]융자한도

현재 대상거래별, 대상업체별 1억 불까지로 되어 있어 대형공사의 수주가 곤란하므로 융자한도를 대상거래별로는 1억불로 하고 대상업체별로는 2억불까지로 상향 조정한다.

[6]융자비율

현재 융자대상계약금액의 70%내의 국내수요 자금에 한하고 있어 실제 사용가능액이 제한된다. (산업설비—플랜트—는 선수금을 제외한 전액에 대해 「국내외 소요자금」으로 정해놓고 있다)

개선방향으로 선수금을 제외한 전액으로 하고 국내외 소요자금으로 용도를 확대한다.

[7]지급보증

현재 발주국 중앙정부 또는 세계 일류은행의 보증서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 보증조건을 충족한 정도의

OECD보고서는
을 세계경제가
미국 등 선진국
의 경기회복과
아시아 신흥공
업국들의 고도
성장지속으로 2
% 이상의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건설경
기의 활황이 기
대된다고 밝혔
지만 국내 업체
들은 각종 규제
에 막혀있는 실
정이다.



공사라면 시공자금용 요청이 불필요한 공사이므로 이 요건을 삭제하기로 한다.

[8]선수금조건

현재 선수금을 수령하는 공사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 공사의 경우 선수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선수금이 없는 연불공사의 경우에도 지원도록 한다.

[9]현지금융한도

계약잔액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공사자금조달 봉쇄 및 자금경색 원인으로 작용, 한도관리를 폐지한다.

■ 현지금융 이용 개선

[1]비율상환의무

현재 각 공사별 대금수령액이 70%에 달하는 시점부터 잔여공사대금 수령비율에 따라 상환하고 있어 공사대금수령액의 70% 시점은 공사비 투입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금융 만기일전 조기상환에 따른 벌과금 발생으로 업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해외건설업체에만 적용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타산업과의 형평 및 국제금융관계에 어긋나므로 비율상환의무를 폐지한다.

[2]해외부동산 개발을 위한 현지금융

현재 현지금융상환이 공사완공시점으로 되어 있어 해외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현지금융 상환이 가능하기 위해선 개발한 부동산을 분양, 매각해야 하므로 상환시기를 공사완공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그러므로 해외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주체의 자금회수기간을 고려하여 현지금융 차입기간을 업체와 자금공여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3]차관단 구성에 의한 차입규제

현재 2천만불 이상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재무부 장관과 차입시기를 협의하게 되어 있어 국제금융거래규모의 확대와 차관단 구성의 부대비용을 감안할 때 현행 2천만불 기준은 비현실적으로 재무부 장관 협의대상을 5천만불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 합리화지정업체 해외진출허용

현재 지난 86년부터 88년까지 합리화지정업체는 모두 15개 업체이지만 이중 13개 업체가 해외건설면허를 반납했거나 또는 진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해서 과거 시행착오를 거쳐 값진 경험을 축적한 이들 업체의 해외진출을 허용해 수주확대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정부는 해외건설업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전문건설업체도 해외

해외진출에 따른 제도는 과거엔 효과적이었고 국의 차원의 해외건설 진출 도모를 위해 필 요했던 각종 관리제도들이 이젠 오히려 진출 장애요인으로 작용, 해외건설 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전반적인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외건설 국제 경쟁력 강화대책

진출을 허용했으면서도 경영정상화가 달성된 업체까지 합리화지정업체임을 이유로 해외진출을 불허하는 것은 신정부 출범 이후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의한 진출풍토조정을 위해 추진된 해외건설정책 방향에 어긋나는 규제이므로 주거래은행이 합리화지정 목적인 경영정상화가 사실상 달성됐다고 통보해오는 업체중에서 해외건설촉진법령상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의 진출을 허용한다.

■ 세제지원제도 개선

[1] 해외근무자 비과세 한도

현재 76년도에 책정된 금액인 월 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어 그간의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해외근무 유인혜택이 미약, 비과세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백5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2] 해외근로자구입 국산품면세 쿠폰제

현재 구입대상을 기능공에 한정시켜 놓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 관리적 등 일반직까지 구입대상을 확대한다.

[3] 대금수령 현물의 국내반입지원

현재 현물의 국내반입시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 국내자원부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해외자원(원유, 철강 등)을 국내에 반입할 경우 수입관세를 면제하거나 완화한다.

■ 해외증권 발행개선

[1] 발행조건

현재 해외증권종별로 ①자기자본 2백억원 이상 ②신용평가등급 양호 업체(BBB 이상) 등의 필수요건과

① 자기자본비율 ② 순자산배율 ③ 총자본사업 이익율 ④ 배당률 ⑤ 이차보상배율 ⑥ 경상이익율 등의 선택요건(택3)을 충족하는 업체만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업체의 실정·금융시장의 여건에 따른 최적조건의 해외증권발행이 곤란하므로 필수요건(자기자본, 신용평가등급)만 충족되면 발행이 가능하도록 선택요건을 폐지한다.

[2] 발행한도

현재 해외증권 발행으로 인해 증가되는 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 및 장기저리자금의 확보를 위한 해외증권 발행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외국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업체 총주식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발행주식 한도를 확대한다.

■ 외화관리규제 완화

[1] 해외직접투자

5백만불 이하는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해야하고 1천만불 이상은 해외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제도는 허가(신고)절차가 까다롭고 장기간 소요돼 투자시기의 적시성을 상실하는 문제점이 있다.

신고대상투자의 경우 실제로는 허가에 준하여 운영하고 신고수리에 1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은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2백만불 이하의 투자는 사후신고토록 하고 신고대상을 5백만불 이하에서 2천만불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신고요건만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신고를 수

리해 실질적 신고제가 되도록 하며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1천만불 이상에서 5천만불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2] 외화자금 보유한도 확대

현행 제도는 해외건설 계약잔액의 10% 또는 1백만불까지만 외화보유를 허용하고 있어 2~3개월내에 처분될 자금까지도 초과보유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업체의 자금관리에 애로요인으로 작용, 외화보유한도를 계약잔액의 10% 또는 5백만불까지 허용한다.

■ 해외투자보험 가입

현재 해외투자보험은 해외부동산 취득이나 현지법인설립을 위한 해외직접투자시 비상위험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고 있다.

그러나 가입대상에서 해외건설업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주로 제조업체 위주로 지원해 왔다는 이유로 해외건설업체의 보험가입을 배제해오고 있어 가입대상에 해외건설업체의 해외직접투자도 포함토록 요청한다.

■ 타산업 연계진출

EU, NAFTA 발효 등 세계경제의 불록화 추세 극복을 위한 해외직접투자 및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 증가하고 있고 아국임금수준의 상승에 따라 동남아 등 개도국 시장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추세에 있어 이 같은 해외투자와 건설을 연계, 진출할 필요성이 많은 가운데 여타산업 분야의 해외투자시 수반되는 건설공사를 우리 해외건설업체들이 수주토록 할 연계체제가 미흡한 설정이다.

개선방향으로 해외공단개발과 기

간산업투자에 따른 해외건설공사에 우리 해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산업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며 건설공사발주가 예상되는 해외투자의 관련정보를 해외건설협회에 제공토록 상공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은행에 요청하고 해외건설협회에 가칭 「해외투자업체와 해외건설업체간의 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 기타 규제제도 완화

[1] 특정국 여행허가

현재 중국·라오스·캄보디아·쿠바 등 특정국가 여행은 최장 1년(중국 2년)까지로 되어 있으며 구비서류(복수여행)는 공사계약 입증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해외건설공사는 통상 공사착공에서 준공까지의 기간이 최소 2~3년이 소요되고 있어 허가기간을 단기로 제한함으로써 허가기간만료시 다시 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업무부담이 발생해 계약전 수주활동을 위한 현지여행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해외건설업자 및 동반가족에 대한 여행허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공사완료(준공)시까지로 연장하고 건설부 장관이 추천할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한다.

[2] 외국인기술자 국내연수

현재 외국인 기술자사증 발급대상은 ① 외국환 관리법에 의해 외국에 직접투자하거나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외국에 투자한 산업체 ②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외국에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체 ③ 대외무역법에 의해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로 되어 있는 등 해외건설업체가 명

정부는 국외금
융조달의 필요
성이 상대적으
로 큰 해외건설
특성에도 불구
하고 외화의 국
내 유입을 우려
해 국내 통화량
관리를 이유로
여전히 과도한
외환규제를 가
하고 있어 관련
금융제도의 전
향적인 개정이
시급하다.

6

발주된 공사를 단순히 도급받는 종래의 진출 방식보다는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자체자금 조달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한 후 이를 개발 시공, 분양, 판매하는 개발형공사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필요한 금융경쟁력 제고가 절실히 요구된다.

해외건설 국제 경쟁력 강화대책

시적으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해외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기술인력 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내 연수가 곤란하다.

발주처의 현지인 고용의무화 또는 선진건설기술 필요에 의한 외국인 고용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내연수가 불가피하지만 해외건설업체가 국내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입국시키고자 할 경우 사증발급이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등록을 한 해외건설업체도 사증발급대상자 규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사증발급대상을 확대한다.

[3]실무인력의 국제화 능력 제고 궁극적인 국제 경쟁력의 원천은 인력의 국제화·고급화에 있지만 아국 해외건설업체소속 임직원들의 해외에서의 공사관리기법이나 국제금융제도 활용을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Financing) 기법 및 기자재구매기법 등 국제적인 업무능력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해외건설업체 임직원 위크·샾을 개최해 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자율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수요에 따라 수시 실시) 해외건설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장기적으로는 해외건설담당 실무인력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또는 타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 정보체계의 구축

[1]민관협력체제 구축

정부정책방향과 업체보유정보에 상호교환을 통해 정책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관협력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매분기별 1회씩 민관합동

해외건설대책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강화

현재 해외건설협회가 온라인으로 일부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진출국의 건설관련 법규와 회계제도, 세제, 노임 등 수시변경사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중복투자, 정보의 비호환성, 분류체계 미비 등 개별 기업으로서는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라 해외건설협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강화를 통해 통계, 자료의 조사, 분석, 공급체계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며 많은 정보들을 정리·축적하여 정보의 새로운 저장, 검색, 인출, 수정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공사, 건설, 경제, 정치, 금융정보를 업체와 정부가 공유할 수 있는 체제(온라인 서비스 제공)를 마련한다.

특히 해외진출업체들의 경험을 조사·분석하여 국가별 제도와 공사정보에 관한 자료를 축적한다.

■ 건설외교 적극 추진

[1]건설시장진출 확대

건설협상강화를 통해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 건설시장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①한·미 경제협력대화(DEC) ②한·일 신경제 협력기구(NIEP) ③한·EC 각료회의 등 양자 협상에 적극 참여, 선진국 건설시장의 진출을 확대한다.

[2]제3국 공동진출 추진

선진국 업체와의 협력을 선진건설기술 습득의 기회로 활용하고 해외건설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도록 하며 공동진출을 통해 구축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선진국 시장 진출의 토대를 마련한다.

[3]시장경제전환국가와 건설협력 추진

중국과 한·중 건설협력 양해각서 정신에 입각해 양국업체 협작에 의한 중국건설공사 참여를 추진하고 베트남에 이어 러시아와도 건설협력 양해각서(MOU)체결을 추진한다.

한·말레이시아 건설장관회담을 개최한데 이어 한·인도네시아 건설장관회담을 개최토록 하는 등 동남아 주요국가와의 건설협력을 강화하고 이스라엘-PLO지역, 호주, 인도, 멕시코, 페루, 캐나다 등 주요국가와의 실무건설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주요진출유망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4] 개발도상국 인력의 활용체제 구축

동남아 국가 등 개도국의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아국인력의 임금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를 보완하며 아울러 북한과의 전반적인 교류협력 관계개선 추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북한의 저임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한다.

[5] 해외건설관 활동 강화

현재 해외건설관은 9개국에 11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이들의 주요임무는 ①현지공사정보 수집 및 배포 ②건설관계인사와의 건설외교 전개 ③아국업체 수주활동 지원 ④진출지원대책 수립 및 건의 ⑤대발주처 교섭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해소 등이다.

호전되고 있는 해외건설시장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관의 실질적인 수주지원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해외건설업체의 경우 현지건설관의 지원을 통해 이들의 정보 및 경험부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개선사항

- ① 민관합동의 총력수주체제 구축
- ② 건설관을 주축으로 진출업체협의회를 설치하여 연도별 수주전망치의 달성을 추진하며 진출업체와 협조, 대발주처 교섭을 효과적으로 전개
- ③ 건설관을 통해 아국업체의 현지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발주처에서 아국업체에 대한 신용도를 문의해오면 장관을 비롯한 본국 정부관계자의 추천서 발송을 건의
- ④ 공사발주정보 수집활동 강화
- ⑤ 해외건설관회의를 정례화해 연 1회 개최한다. 이 회의를 통해 본국 정부의 해외건설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정책간의 사항을 수렴하여 주재국 및 인접국의 건설관련 정세변화 상황과 업계동향 등을 파악
- ⑥ 건설관 관할구역이 주재국에 국한돼 인접국가에의 해외건설진출 지원이 곤란하므로 해외건설관 관할을 인접국가까지 확대

해외건설관 관할지역 확대 방안

건설관파견국	관할확대 대상국
사우디	레바논, 걸프연안국, 터키, 이스라엘
리비아	이집트, 튜니지, 알제리, EU, 아프리카
이라란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과푸아뉴기니, 피지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브루네이, 미얀마, 인도
필리핀	대만, 홍콩
미국	캐나다, 멕시코, 기타 중남미 국가
일본, 러	

자본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시공회사에서 공사 자금을 조달해서 시공하도록 하고 공사완공 일정기간 후에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연불공사 발주사례가 증가, 시공자 금융 조달 능력이 공사수주를 좌우한다.